#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u>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 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20300066 www.hwar-hwar.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2-09-2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05-19

# 화르화르

## 정보공개서

(주)에이치브라더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에이치브라더스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u>가맹거래사</u>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9, 2층(가락동, 2층)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2-3401-8892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6973-119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관리팀 02-3401-8892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서류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별첨3]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별첨4] 가맹본부 재무 증명

##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브랜드	Ξ.	주 소					
	화르화르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9, 2층(가락동, 2층)					
(주)에이치	법인 설립등	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브라더스	2012년 6월28일		2012년 7월1일	하병욱	02-3401-8892		02-6973-1192	
	법인등록번호 18		0111-0815142	사업자	등록번호	6	21-81-96340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11801/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9, 2층(가락동, 2층)						
사용인(임 원)	하병욱	화르화르	대표	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u> </u>			하당	하병욱 02-3401-8892		02-6973-1192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11.001/01	이재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9, 2층(가락동, 2층)						
사용인(임 원)		화르화르	대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호	대표팩스번호		
			하칭	병욱	02-3401-8892		02-6973-1192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하병욱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2길 9(가락동)				12길 9(가락동)		
게여하시	이재영	존슨켄터키외1	대표	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계열회사	/(주)비브라더스		0 7	대영	02-3401-8	892	02-6973-1192		
	법인등록번호	110111-5283	3190	사업	자등록번호		215-87-87293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화르화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화르화르	_
상 호	화르화르 00 점	_
상표(서비스표)	_	

광 고	해당없음	-
그 밖의 영업표지	对这种正	_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4,648	511,284	-476,635	24,945	10,444	11,843
2022년	30,812	489,363	-458,551	35,471	18,077	18,084
2023년	36,199	459,465	-423,266	55,172	35,279	35,284

※ 별첨4 참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1)의 재무제표 상 2022년~2023년 매출액은 가맹사업에 의한 매출이 아닌 기타 유통관리사업에 의한 매출입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 더 ㅂ	٥lㄹ	허 지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이펜어		2018.04.06~현재	(주)에이치브라더스 이사	관리
	이재영	이사	2015.06 ~ 2018.04.05	(주)에이치브라더스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하병욱	대표이사	2018.04.06~현재	(주)에이치브라더스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5.06 ~ 2018.04.05	(주)에이치브라더스 사내이사	관리
			2012.07~2015.05	(주)에이치브라더스 대표이사	회사 경영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역전구(당)	
*2023년 12월 31일	2	0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비브라더스/이재 영, 하병욱	가맹사업 경영	2014.10 <sup>~</sup> 현재	존슨켄터키(등록번호 : 20140971)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비브라더스/이재 영, 하병욱	가맹사업 경영	2018.01 <sup>~</sup> 현재	감성커피(등록번호 : 20180070)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_	_	_	_	_

<sup>※</sup>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Ⅱ. 가맹본부의 [화르화르]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2년 6월 11일

## 2. [화르화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10 - 1 0 -	0 日 표 시	네표시ㅇ	기간	
(주)화르화르	화르화르	하병욱	2012.06.11~20	부산시 금정구 식물원로 64 101동 702호
(十)	작=작=	0 0 T	13.1.24	무단시 급성 [ 극물원도 04 101층 702호
(주)화르화르	화르화르	하병욱	2013.1.25~201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가락동,
(十)되므되므	<u> </u> 파트되트	M 9 4	5.04.23	제일오피스텔 613~614호)
(조)하고하고	화르화르	하병욱	2015.04.24.~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9,
(주)화르화르		어당독	15.05.31	2층(가락동, 2층)
(주)에이치브라	화르화르	이재영	2015.06.0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9,
더스	좌드좌드	0 1	18.04.05	2층(가락동, 2층)
(주)에이치브라	히고히고	-1 배 으	2018.04.06~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9,
더스	화르화르	하병욱	재	2층(가락동, 2층)

##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화르화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사는 사는 -	치킨	치킨, 치킨호프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시작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7	27	0	27	27	0	27	27	0
서울	1	1	0	1	1	0	1	1	0
부산	4	4	0	4	4	0	4	4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2	2	0	2	2	0	2	2	0
광주	2	2	0	2	2	0	2	2	0
대전	1	1	0	1	1	0	1	1	0

울산	2	2	0	2	2	0	2	2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3	3	0	3	3	0	3	3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1	1	0	1	1	0	1	1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4	4	0	4	4	0	4	4	0
경남	7	7	0	7	7	0	7	7	0
제주	0	0	0	0	0	0	0	0	0

##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7	0	0	0	0	27
2022	27	0	0	0	0	27
2023	27	0	0	0	0	27

## 6. [화르화르]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당 브랜드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 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丁正	경오/이금 	정답표시	등록번호	日승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관계 인(임원)	(주)비브라더 스/ 이재영, 하병욱	존슨켄터키	20140971	치킨	16/0	16/0	16/0
특수관계 인(임원)	(주)비브라더 스/ 이재영, 하병욱	감성커피	20180070	커피	253/0	299/0	311/0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 한 곳이 \*2023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11 - 22,	무가제 미포암)
			*2023년 기	l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u>구</u> 매출액		평균 (상한)	연간 매출액	평균 (하한)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27							
서울	1							
부산	4							
대구	0							
인천	2							
광주	2							
대전	1							
울산	2							
세종	0							
경기	3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1							
전남	0							
경북	4							
경남	7							
제주	0							

<sup>※</sup>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8.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sup>※</sup> 산정할 근거자료가 없습니다(가맹점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7개	3,891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화르화르]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전 사업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 8	수단	7171	지출 비용(	단위: 천원, ·	шП	
구분	구년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광고	비공개	비공개	0	0	0	
판촉	비공개	비중계	0	0	0	
합계	_	_	0	0	0	

## 11. 가맹금 예치 기관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전지점	기업	국민은행 전지점	1588-9999

- ㅇ 은행영업점 : 본인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예치
- ㅇ 인터넷뱅킹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가맹금예치금 예치
- \* 인터넷뱅킹메뉴: 국민은행홈페이지-기업서비스-SOHO센터-가맹금예치제도-가맹점사업자-가맹금예치
- o「가맹금예치금」예치내역 조회 : 가맹점사업자가 인터넷뱅킹으로 본인이 예치한 가맹금예치금 내용 확인 가능
- ⇒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기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기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기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0]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_	_	-	_	-	

※ 해당 사항 없음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화르화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초도물품비용, 기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0	계약체결일	영업개시 이전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매뉴얼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 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0	계약체결일	교육개시 이전 계약해지	· 교육개시 전 : 전액 반환 · 교육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VAT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 가맹금, 로열티, 물품대금 미 지급 등 -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 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VAT포함)
합계	2,000
가맹비	0
교육비	0
보증금	2,000(VAT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준 평수 : 66m², 단위: 천원, VAT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b>금</b>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_	[26,000]	1,300			
화 덕	협력업체	16,000	-	화덕설치 계약시	자재/물품 구입 전	화덕비용 할부안내
주방기기	협력업체	7,000	234	주방기기 계약시	또는 공사/설치 시작 전 계약취소 (비용이 발생된	계약금 5,000 설치비 1,000 월 할부금 250 (x 40개월)
집기·비품	협력업체	3,000	_	집기·비품 계약시	경우, 반환불가)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점포의 위치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가 귀하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주방기기의 시공/설치를 직접 하고자 하는 경우, 주방기기 700만원 (VAT별도)의 감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가맹점사업자)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 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공급업체
- ⇨ [화르화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VAT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료	가맹본부	실비	광고 시행 전	광고 실시 전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로열티	가맹본부	없음	카드결제일 또는 수시출금일	지급 조건	후불납부 외 선불납부 부분은 잔여일수로 계산하여 반환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변경 전	간판을 변경한 후에는 반환 불가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_	_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Ⅶ. 가맹 본 부 의 경영 및 영 업 활 동 등에 대한 지

			원"	항
			목 :	참조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사항 없음(직전사업연도 차액 가맹금 없음).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 당사는 귀하의 재고관리·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 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 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 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최초가맹금은 <u>계</u>약이행보증금 금이백만원(₩2,000,000)(VAT없음)이며, 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계약기간 및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즉시 미납금을 완제하고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하고 화덕대금 잔여분이 있을 시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화르화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필수품목(원 • 부재료)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 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단위: 원)

순번	품목명(단위)	공급가격 상한	공급가격 하한	구분 (공급업체)
_	-	_	_	_

※ 직전 사업연도 공급내역 없음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브랜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 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_	_	_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식재료	_	_	_	_	-

※ 해당 사항 없습니다(대가 수수내역 없습니다).

2) 당사가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_	_	_	-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

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화르화르 오리지널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u> </u>
화르화르 바삭한 화덕구이	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중단 또는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상품공급의
다른 가맹점사업자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단 또는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 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 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권장가 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화르화르 오리지널	15,000	호페시키 ㄸ느 고ㅁ	
화르화르 바삭한 화덕구이	15,000	홈페이지 또는 공문	

####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인 남중 남자 	가맹본부	계열회사
화르화르와 동일한 업종(치킨, 치킨호프)	화르화르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간 이격 거리 500m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웃렛 등)은 위 설 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비고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 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	재조정 사유 발생 → 당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서면 통지후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_	_	-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8 <b>3</b> 101	_	_	_	-
온라인	_	_	_	-
홈쇼핑	_	_	_	-
전화권유판매	_	_	_	_

※ 해당 사항 없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sup>①</sup>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sup>®</sup>
*2023	100%	0%	0%	0%

<sup>※</sup>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은 불가하지만, 다른 채널을 통한 매출액이 없어 100%로 기재하였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①</sup>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sup>
*2023	100%	0%

※ 기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 [화르화르] 가맹사업의 최초계약기간은 [1]년이며, 갱신 및 재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ul><li>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li></ul>	제6조 제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6조 제2항
<ul><li>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li></ul>	제6조 제2항
○ [화르화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 우	제6조 제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점포의 점유권을 갱신되는 기간 중에 계속 보유를 하지 못할 경우	제6조 제2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후, 관계당국의 권고나 영업방침의 변경으로 계약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가맹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수정된 가맹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6조 제2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34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 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가 변경한 영업표지의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영업방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 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갑"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아상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본계약의 준수사항 위반 시, 특약사항 위반 시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 는 등 가 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계약 즉시 해지 사유 ②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 우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4조 제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u> </u>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 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 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아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계약 해지 사유 ②]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레40조 레이하
3) 가맹사업의 통일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영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제43조 제3항
4)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동의 여부 회신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기존 계약 내용대로 계약조건을 유지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맺고 있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개인적 적성과 경영마인드 및 자금동원능력이 반영되어 가맹계약상 그 지위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위탁 경영하 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하 "양도 등"이라 한다)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양도 등"에 앞서 1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먼저 양도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양수인이 본 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본부가 전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u>계약이행보증금 금이백만원 (2,000,000)(VAT없음)</u>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는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이 지급한 전항의 금액은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양수인은 가맹점사업 자의 가맹계약의 잔여기간을 부여 받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⑥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가맹본 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 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 한 교육비용은 쌍방 간 협의하여 상속 인이 부담함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지정한 범위 내의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 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파윤수류 방
업무위탁	불가능	_	_	_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귀하는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당사와 협의 없이 자기 또는 자기(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화르화르와 동일업(치킨, 치킨호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의[화르화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없음	1년 365일,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이상 연속 휴무할 수 없음	문의 (02-3401-889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자율	자율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 당사는 귀하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 당사는 [화르화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ㅂㄷ╴저 뒨	
十七	구분 광고 성격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브랜드광고	10%	90%	광고 세부계획을 광고일 기준으로 1개월	
	상품광고	10%	90%	전에 책정하여 귀하에게 통지 → 귀하는	
전국광고	브랜드+가맹점모집광고	50%	50%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상품+가맹점모집광고	50%	50%	납입 → 광고시행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없음	
지역단위	ᄜᅕᅘᅛᄺᇶ	어ㅇ	1000/	-11 다 이 ㅇ	
기년기   매출활성화   개별단위		없음	100%	해당없음	
판촉	매출활성화	없음	100%	해당없음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 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 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 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 시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 귀하는 광고 디자인(전단지, 책자, 자석전단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당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①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은 당사가 대여하는 운영메뉴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시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귀하는 가족 및 직원에 의한 전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며, 이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귀하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가맹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2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은 약 [7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평수 : 66m², 단위: 만원, VAT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총(35)일	
_	<ul><li>전화문의 접수</li><li>정보공개서 제공(계약 15일 전)</li><li>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li><li>가맹계약서 제공(계약 15일 전)</li></ul>	1일	
전문컨설턴트 배정	- 1:1 전문컨설턴트 상담	1일	
가맹계약서 작성	- 가맹계약 체결 - 보험증권 교부(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 가맹금 지급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가맹계약서 제공 후 15일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1일	
매장실측 및 도면미팅	- 점포구조설계 및 인테리어계약	3일	10~11쪽 참조
화덕설치 공사 및 공사감리	- 화덕설치 공사 - 주방기기, 집기·소모품 준비	5일	日工
매뉴얼 제공 및 본사교육	- 점포운영교육실시	3일	
매장 집기류 입고 및 원부자재 입고	- 매장오픈 전 필요집기 입고	1일	
최종 오픈 리허설	- 가맹본부 운영사업부 파견 - 현장점검 및 관리 교육	1일	
그랜드 오픈	- 오픈 이벤트	1일	
가맹점 관리	- 메뉴, 운영, 매출 관리 교육	1일	
지속적인 본사 지원	- 매장 매출 확인 및 관리	오픈 후 수시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 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 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TI 그 되는!	비용부담	
점포환경개선 시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지급절차	제외사유	비고
O점포의 시설, 장비,	ㅇ간판교체 비용	O점포의 확장 또는	ㅇ가맹점사업자의	ㅇ가맹사업거	ㅇ점포환
인테리어 등의	o인테리어 공사비용	이전을 수반하지	비용 청구(공사	래의 공정	경개선
노후화가 객관적으	(쟁내장)	않는 점포함에는 :	계약서 등 공사	화에 관한	일로부터
로인정되는경우	용을 제외한 실	20%	비용을 증빙할	법률 제12	3년 이내
0위생이나 안전의	내건축공사에 소	O점포의 확장 또는	수 있는 서류 참위	조의2 규	에 기맹
결함으로 인하여	요하는 일체의 비용	이전을 수반하는	→ 90일 이내에	정에 의해	본부의
7빵업이 횡쇄을	단, 가맹사업의	점포환경개선 :	기맹본부 부담액을	부 담 제 외	책 임 없
유혜 어랍나	통일성과 무관하게	40%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유 해당	는 새유
정상적인 영업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시	로 계약
현저한 지장을	추가 광를 실시		(단, 가맹본부와		이 종료
주는 경우	함에 따라 소와타		가맹점사업자간		(계약의
	비용은 제외)		별도의 합기가 있는		해지·영
			경우 1년의 범위내		업양도
			에서 분화답기능		평대
			ㅇ가맹점사업자		경 우
			가 가맹본부		가맹본
			또는 가맹본부		부 부
			가 지정한 자		담액 중
			를 통하여 점		잔 여 기
			포 환 경 개 선 을		간에 비
			한 경우에는		례하는
			점 포 환경 개 선		부담액은
			이 끝난 날부		지하다
			터 90일 이내		아니하
			에 가맹본부		거나 이
			부담액을 지급		미 지급
			<분화답시절차>		한 경우
			ㅇ가맹점사업자의		에는 환
			비용 청구(공사		수 가
			계약서 등 공사		0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뷔	
→ 3차에 걸쳐	
기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시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기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기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기맹점시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의)	문의: 관리팀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_	-	_	_	-	_

※ "해당없음"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화르화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화르화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만원)	비고(VAT포함)	
개점 전 교육	3일(본사교육 1일,	0(VAT포함)	시행시 이수	
개점 전 포퓩 	매장교육/오픈 2일)	U(VAT至台)	시왕시 이 <u>구</u>	
수시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100% 부담(실비)	시행시 이수	
특별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100% 부담(실비)	필요시 이수	
재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100% 부담(실비)	필요시 이수	

####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당사에서 정한 교육 및 훈련을 불참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점승인을 거부하 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상품공급의 중단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 으로 불참하는 경우, 귀하의 가맹점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_	-	_

<sup>※</sup>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sup>※</sup>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_	_

<sup>※</sup> 해당사항 없음(직영점 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가장 ㅁ 에서 선생시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l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나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ठॅ <del>ो</del>	
	지점장	~1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제공자명

## ■ 가맹희망자 보관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 <sup>주</sup>	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	O커피숍 내, 이메일)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7 0 7 11 1	0 - 0 / 1/ /	가맹점현황문서
⑥ 수령확인문구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	은 가맹계약서, 정보공	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혀	히( 수령하)	연 <u>수</u> )
	<b>※ "<u>수령하였음</u>"</b>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	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 ■ 가맹본부 보관용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명	
	가맹희망자
(※ 모든	빈칸은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주소			
③ 전화번호			
④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 제공 받은 시간까지 작성(24시 형태로), 예)오후 2시면 14시로 기재		
⑤ 제공받은 장소			
	※ 구체적으로 작성		
	(가맹본부 사무실, OO가맹점 내, 서울시 강남구 소재 OO커피숍 내, 이메일)		
⑥ 수령확인문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상기 가맹희망자 본인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정히 ( <i>수 렁 하 였 음</i> )		
	   <b>※ "수령하였음"</b> 이라고 반드시 가맹희망자 자필로 기재		

가맹본부 제공 담당자				
제공자명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주의사항 : 가맹본부 담당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를 제공하고 ①  $\sim$ ⑥의 각 빈칸이 가맹희망자 자필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v.2014.02

[별첨4] 가맹본부 매출 자료 2023년,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2년,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